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위원회 회의록 미공개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담당 업무에 대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 보관하여야 하고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회의록(비공개 회의 제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다만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 2023년 3~4분기 위원회 개최 후 회의록 또는 회의록 비공개 사유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과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위원회 회의록 미공개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르신복지과

내 용

1. 업무개요

어르신복지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보관하여야 하고,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회의록(비공개 회의 제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다만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어르신복지과는 2023년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후 회의록 또는 회의록 비공개 사유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어르신복지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어르신복지과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위원회 회의록 미공개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립지원과

내 용

1. 업무개요

자립지원과는 「의료급여법」,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보관하여야 하고,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회의록(비공개 회의 제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다만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자립지원과는 2023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후 회의록 또는 회의록 비공개 사유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자립지원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자립지원과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위원회 회의록 미공개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족정책과

내 용

1. 업무개요

가족정책과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에 대한 각종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보관하여야 하고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회의록(비공개 회의 제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다만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족정책과는 아래의 표와 같이 위원회 회의 개최 후 회의록 또는 비공개 사유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

[표] 회의록 또는 비공개 사유 미공개 내역

연번	위원회명	비공개 건수	상세내역
1	아동복지심의위원회	2	23년 4분기
2	아동위원협의회	1	23년 4분기
3	양천구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1	23년 4분기
4	청소년지도협의회	1	23년 4분기
5	지역돌봄협의회	1	23년 4분기
6	여성폭력방지위원회	1	23년 4분기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① 관련자 의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관련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록은 공개 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받을 우려가 높고 발언내용 공개에 따른 심리적 부담으로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비공개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검토 의견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각 법률 및 조례에 따라 회의록이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관련 규정에 의거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는 것이 적법한 업무처리라고 할 것인 바, 관련자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조치할 사항

가족정책과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위원회 회의록 미공개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육정책과

내 용

1. 업무개요

보육정책과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친화도시조성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 보관하여야 하고,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회의록(비공개 회의 제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다만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보육정책과에서는 2023년 출산친화도시조성협의회 회의 개최 후 회의록 또는 회의록 비공개 사유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보육정책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보육정책과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